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5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박선원 · 허성무 · 유동수
신정훈 · 강준현 · 이수진
조정식 · 부승찬 · 박지원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

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규 및 상관”을 “적법한 상관”으로 한다.

①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 제목 “(명령 복종의 의무)”를 “(명령 복종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직무상”을 “적법한 직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적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경우
3.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는 경우

③ 군인은 제2항에 따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종 거부 사유 및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
5.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u><신 설></u>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u>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④ (생략)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u>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 ----- <u>적법한 상관</u>----- -----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5조(<u>명령 복종의 의무</u>)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u>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25조(<u>명령 복종의 의무 등</u>) ① -----<u>적법한 직무상</u>-----. ② <u>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u>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u> 2. <u>적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경우</u> 3. <u>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u>

<u><신 설></u>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u>1. ~ 3. (생략)</u> <u><신 설></u> <u>4. (생략)</u> ② (생략)	<u>하여 명령을 발하는 경우</u> ③ <u>군인은 제2항에 따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종 거부 사유 및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u>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 -----. <u>1.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u> <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u>5.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u> <u>중하는 행위</u> <u>6. (현행 제4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	---